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 제65조(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7조제3항·제4항 및 제127조제4항제2호 신설).

II. 검토의견

1.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안 제81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

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순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1)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2)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1차적으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 추가적인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 및 승계와 관련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상속 순위는 제65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는 것임.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제57조제5항(장해급여), 제62조제2항 및 제4항(유족보상연금 등 유족급여)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개정안에 따른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의 순위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외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전반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있어 제65조에 따른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65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족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u>제65조를 적용한다.</u>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u>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u>

(전문위원 이 은 정)